

라미라다시

행정 시책

시책 제 6-19

미국 장애인 보호법 및 재활법 제 504 조에 따른 민원 및 항의 신고 절차

민원 및 항의 신고 절차는 1990 년의 미국 장애인 보호법(ADA)과 1973 년의 재활법 제 504 조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립되었습니다. 라미라다시의 서비스, 활동, 프로그램 및 혜택 조달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여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가 민원 및 항의신고 시 사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라미라다시의 행정 시책 제 0-17, 미국 장애인 보호법과 행정 시책 제 1-10 항의 절차는 고용과 연관된 장애에 대한 차별의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미라다시는 시민이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적, 우려 또는 항의 사항이 있으신 시민은 정식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전화만 주셔도 됩니다. 정식 민원 제기를 위해서는 민원 및 항의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ADA 코디네이터나 그의 지명자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시민에게는 민원 절차와 서식을 ADA 코디네이터나 그의 지명자가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민원은 이름, 주소, 민원 제기자의 연락처와 같은 주장된 차별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는 것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해주시고 장소와 날짜도 포함해주시요.

민원을 접수하는 대신 장애가 있으신 분은 면담이나 전화 인터뷰도 요청에 한해 가능합니다. 만약 추가 편의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ADA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자 또는 그의 지명자는 주장된 위반이 일어난 날짜 60 일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다음 주소로 항의를 접수해야 합니다.

Mark Stowell
ADA Coordinator, Public Works Director/City Engineer
City of La Mirada
13700 La Mirada Boulevard
La Mirada, California 90638
이메일: adacoordinator@cityoflamirada.org
전화: (562) 902-2354
팩스: (714) 522-5800

채택 날짜 : 8/16/17

제프 보인튼

시 관리자

//서명//

대문자 성명

직책

서명

라미라다시

라미라다시

행정 시책

시책 제 6-19 미국 장애인 보호법 및 재활법 제 504 조에 따른 민원 및 항의 신고 절차

항의가 접수되고 15 일 이내 ADA 코디네이터나 그의 지명자가 항의자와 대면하여 항의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한 미팅 이후 15 일 이내 ADA 코디네이터나 그의 지명자는 서면 또는 필요하다면 큰 활자, 점자 및 녹음테이프와 같은 항의자가 읽기에 무리가 없는 형식으로 회신을 할 것입니다. 그 회신은 라미라다시의 입장을 밝히고 항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선택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항의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했다고 항의자가 느낄 경우, 항의자나 그의 지명자는 회신 수령 후 15 일 이내 결정에 대한 항소를 인사과 매니저나 그의 지명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된 항소를 선호하며 요청에 따라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기타 방법으로 항소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제기가 접수되고 15 일 이내 인사과 매니저나 그의 지명자는 항의자와 대면하여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한 미팅 이후 15 일 이내 인사과 매니저나 그의 지명자는 서면으로 회신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항의자가 읽기에 무리가 없는 형식으로 최종 해결책을 항의자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ADA 코디네이터나 그의 지명자를 통해 접수된 모든 민원이나 인사과 매니저 또는 그의 지명자에게 접수된 항소 그리고 이 두 곳 사무실의 답변서는 최소 3 년까지 라미라다시정에 보관될 것입니다. 항의서의 요약본은 5 년 동안 보관될 것입니다.

라미라다시의 ADA/504 자발 평가서와 이행 계획서 사본은 ADA 코디네이터에게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